

시립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광명역 종합터미널 내 「시립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

개원 예정일이 2023년 6월 26일입니다.

이에 「시립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 신입원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시는 분은 입소대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I.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소재지	영아 정원	개원 예정일
시립킨더레일 광명역어린이집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51 (광명종합터미널 내 1층)	51명	2023. 6. 26.(월)

II. 모집 대상 및 인원

- 모집대상 : 만0세 ~ 만2세 영아 (2020. 01. 01. 이후 출생 영아)
- 모집인원

구 분	출생일 기준	모집인원	반구성	비고
		총51명	총11반	
만0세	2022.01.01. 이후 출생아	15명	5반	
만1세	2021.01.01. ~ 2021.12.31.	15명	3반	
만2세	2020.01.01. ~ 2020.12.31.	21명	3반	

※ 보육교직원 모집 미달 및 연령별 인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 개설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원아모집 상황에 따라 반 구성을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III. 모집 절차 및 방법

- 모집절차 : 입소대기(온라인) → **입소 확정(개별연락)** → 증빙서류 제출(방문)
- 입소대기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 후 어린이집 메뉴에서 입소 대기 선택하여 내용확인 후 “입소대기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입소대기 신청은 **최대 3개소** 가능, 타 어린이집 **재원 중인 경우 2개소** 가능
- 단, 외국인 아동의 경우, 사이트 가입이 불가하므로 어린이집으로 서류제출
(어린이집 원장과 사전통화 후 서류접수)
- 어린이집으로부터 개별연락을 받으신 분에 한해 증빙서류 지참하여 접수
- **입소확정시 서류 제출 장소 : 시립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 원장실**

3. 입소모집 기간

구 분	기 간	
입소대기 신청기간	2023. 5. 29(월) 10:00 ~ 2023. 6. 2.(금) 18:00	
입소 확정기간	1차	2023. 6. 5.(월) 18:00까지 * 1차 입소 확정 포기시 2차 입소 확정 안내
	2차	2023. 6. 8.(목) 18: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접수시간	2023. 6. 8.(목) ~ 2023. 6. 13.(화) (10:00 ~ 17:00)	

IV. 입소대기 신청 시 유의 사항

1. 입소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우선순위점수)에 따라 입소확정이 진행되오니 착오신청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누락 및 착오입력 등(예: 연락처 잘못 기재)으로 연락이 불가하거나,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2. 입소자 확정은 입소대기 신청아동을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3. 입소 확정 후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차순위 대기자 입소가 가능합니다.
4. 입소확정 후에 관련 입소증빙서류 확인 결과 당초 신청사항과 상이할 경우 입소확정이 취소됩니다.
5. **입소 시 현재 재원 중인 어린이집(원장 등)에게 퇴소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6. 입소대기 신청 시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신청 건의 입소대기 신청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 삭제 처리 진행

7.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입소대기신청안내 참고 및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단축번호 1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V. 문 의

※ 전화 상담 가능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전 이후 시간에는 통화가 불가능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 연락시 문자를 남기시면 회신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설명(원장명)	이메일	연락처	비고
시립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 (원장 강연재)	kinder_rail@naver.com	010-4499-2606	

붙임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항목당 100점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구 분	자 격
1순위 (항목당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맞벌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의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2순위 (항목당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아

붙임2. 입소 우선순위 확인 및 제출서류 안내

- ※ 서류미비 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제출 바라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준하여 아래 제출서류 내 서류만 인정되며 기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개원일 기준 입소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음.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순위	수급자	•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필수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임신부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중 1부 필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맞벌이가구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 근로계약서 •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 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①② 중 1부 필수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 :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필수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자영업자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규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 서류 	필수
조손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원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 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 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